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2017991 판결 [공사대금의 청구 등]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전태진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재구
변 론 종 결 2021. 4. 7.
판 결 선 고 2021. 4. 28.
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8가합11341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7,622,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공사대금 지급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청구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지급받아야 할 추가공사대금을 추후 피고의 후속 공사를 수주해 보전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이 사건 정산합의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선행공정인 기계설비공정의 지연 때문에 지체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추가 인력을 투입해 야간 및 휴일 작업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제6항이 정한 ‘피고의 지시에 의한 추가공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487,622,565원(= 원고의 총 투입비 1,444,122,565원 - 수령금액 956,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별도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약정 관련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와 별도로 원고가 추가 인력을 투입한 데 대한 추가공사대금 487,622,56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정산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지급약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 또는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487,622,5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고쳐 적거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2행의 “27호증”을 “27, 42호증”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6면 3행의 “규정하고 있는바”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은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 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각호 부분은 생략), 제6항은 '피고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피고와 원고는 공사시공 이전에 추가공사의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공에 긴급이 요구되거나, 사전에 공사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공사시공 중 또는 시공 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6면 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원고의 후속 공사 수주를 통한 추가공사대금 보전'이라는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정산합의는 유효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9억 5,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①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정지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 ② 갑 제5~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은, 그 작성자 또는 증인이 '피고의 공사 관리 책임자들로부터 다른 공사 현장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정도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 정산합의에 원고가 주장하는 정지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 ③ 갑 제23, 28, 37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의 관리그룹장 H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F에게,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의 지시로 추가 역무를 제공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I에게, 추후 다른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낙찰업체로 선정될 경우 이 사건 공사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한 데 대한 추가공사대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H가 작성한 위 각 진술서에도 ‘이 사건 정산합의가 원고의 후속 공사 수주를 통한 추가공사대금의 보전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 H는 제1심 법정에서 ‘I에게 다른 공사현장에서 추가공사대금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다만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고, ㉧ F 역시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차후 공사에 협력사로 들어간다고 약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다른 공사의 하청을 통해 추가공사대금을 보전 받으라고 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H의 위 각 진술서를 근거로 이 사건 정산합의에 원고가 주장하는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고 바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④ 갑 제24, 46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의 조달그룹장 J이 ‘I에게 공사그룹과 잘 협의하여 추가 정산을 받으라고 조언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 이 사건 공사의 후임 현장소장이 된 K이 ‘피고의 후속 공사에 원고를 참여하게 해 추가공사대금을 보전해 주고자 하였으나, 원고에게 입찰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그리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내용으로서, 역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정산합의에 원고가 주장하는 정지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이 사건 정산합의에 원고가 주장하는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추가공사를 지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이 사건 공사가 선행공정의 지연이라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지체되었음에도, 피고의 현장소장 F이 공사기간의 준수를 지시하는 바람에 원고로서는 추가 인력을 투입해 이른바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 제25, 31, 36, 39, 4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선행공정의 지연 때문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 돌관공사를 함으로써 그 주장의 추가공사대금을 지출하게 되었다고 바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F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공사의 선행공정을 피고가 직접 시공하였는데, 그 선행공정은 지연되지 않았다’, ‘갑 제25호증의 1, 2에 각 기재된 선행공정 가운데 설비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마무리 단계의 시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선행공정인 L 주식회사의 배관설치공사와 M의 기계철골설치공사가 지연되어 원고가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정의 약정 공사기한, 실제 착공시기 및 완공시기, 공사기간의 연장 여부 및 그 사유, 위 각 공정의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이 사건 공사의 지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설령 위 각 공정이 일정 기간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상당의 추가 인력의 투입이 위 각 공정의 지연과 피고의 공사기간 준수 지시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착공일인 2015. 5. 4.부터 인력을 투입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출력일보(갑 제20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F이 추가 인력의 투입을 지시하였다는 2015. 5. 11. 이전에도 이미 야간작업 인원을 투입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 전에 선행공정의 진행 등 현장상황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추가 인력의 투입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는데(2019. 11. 11.자 준비서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추가 인력 투입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견적이나 필요한 인력 투입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에게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거나, 발주처가 피고에게 선행공정의 지연을 지적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가 선행공정의 지연을 이유로 피고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거나, F이 추가 인력의 투입에 대해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설령 F이 2015. 5. 11. 원고에게 추가 인력의 투입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돌관공사대금의 지급을 전제로 돌관공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1심 판결문 6면 14, 15행의 “제28호증의 1”을 “갑 제28호증의 1, 갑 제37호증”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7면 1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경근, 판사 최은정, 판사 최항석